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충북경제자유구역청(도 출장소) 신설에 따른 정원사항과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및 도정 현안업무 추진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 : 3,028명 → 3,085명(+57명) (안2조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3,028명 → 3,085명(+57명)
- 직급·직종별 정원조정 내역
 - 일반직 53명 증원 :
(1·2급 +1명, 3급 +1명, 3·4급 +1명, 4급 +3명, 5급 이하 +47명)
 - 별정직 1명 증원 : 5급상당 이하 +1명
 - 연구직 4명 증원 : 연구관 +1명, 연구사 +3명
 - 소방직 : 소방정 +1명, 소방령 이하 △1명
 - 기능직 : △1명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신설과 비상대비자원 관련법 등 법령개정사항 및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주요 내용은,

- 정원의 총 수를 3,028명에서 3,085명으로 57명 증원하고,
- 일반직 53명과 별정직 5급 1명, 연구직 4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감원하는 것임.

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종시 수탁업무 추진에 따른 증원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및 동 규칙,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별정직 1명 증원 및 감사관, 도립대 사무국장 직급상향 등을 반영한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신·구조문 대비표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 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③ ~ 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17조(지방공립대학 등)** ① (생략)

- ② 지방공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대학에 교무처·학생처·기획처 등과 사무처나 사 무국을, 전문대학에 교무과·학생과 등과 사무국이나 서무과를 둘 수 있다.
③ 대학의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, 과장은 일반직 4 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, 사무처장 외의 처장 등은 교수나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.
④ 전문대학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으로, 서무과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, 서무과장 외의 과장은 교수·부교수나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.
⑤ ~ ⑥ (생략)

- 제30조(정원의 규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본청 ·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-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 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 · 도의 5

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~⑤ (생략)

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2호

2.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해서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하며, 서울특별시의 담당관 중 1명은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, 7명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, 4명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, 부산광역시의 담당관 중 4명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, 인천광역시의 담당관 중 2명(감사 업무 및 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)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, 경기도의 담당관 중 4명(1명은 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)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,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, 강원도의 담당관 중 2명(감사 업무 및 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)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, 그 밖의 광역시·도의 담당관 중 1명(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)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으며, 경기도의 행정(2)부지사 밑에 두는 소방담당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, 소방담당 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할 수 있고,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방담당 과장 중 1명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. 다만, 비상기획 업무, 여성정책 업무 및 공보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의 경우에는 같은 직급 상당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

제12조의2(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)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.

1.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
 2.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,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
 3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도 교육청
- ② ~ ③ (생략)

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(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외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

⑤ ~ ⑥ (생략)

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

제14조(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군인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가.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

나. 「군인사법」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2.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⑥ ~ ⑧ (생략)

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

제2조의2(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) 영 제14조제5항제2호에서 "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법률 제8876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일반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.

인건비 용 추계서

○ 정원 변동내역 : 총정원 3,028명 \Rightarrow 3,085명 (증57명)

- 일반직 +53명, 별정직 +1명, 연구직 +4명, 기능직 △1

○ 추가 소요 비용 : 3,658,346,639원 (1년)

(단위 : 원)

구 분(예산과목)	추가 소요비용	비 고
총 계	3,658,346,639	
○ 인건비	2,833,458,749	
- 기본급	2,095,888,800	
- 수 당	493,787,054	
- 정액급식비	88,920,000	
- 명절휴가비	104,794,440	
- 연가보상비	50,068,455	
○ 물건비	137,040,000	
- 직급보조비	140,580,000	
○ 이전경비	687,847,890	
- 성과상여금	145,456,890	
- 연금부담금	197,984,000	
- 보전금	203,830,000	
- 퇴직수당부담금	65,955,000	
- 국민건강보험금	74,622,000	